

부산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48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4838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6. 9 선고 2020가합108508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윤길현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정돈움

변론종결 2022. 4. 7.

판결선고 2022. 5. 12.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6. 9. 선고 2020가합10850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와 C(개명전 이름: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14. 12. 2.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7. 1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② 피고는 C(개명 전 이름: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3. 접수 제2822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법원 2020. 11. 23. 접수 제2069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2014. 3. 27.”을 “2013. 3. 27.”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보충 내지 강조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피고 주장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은 원고의 채무자(C)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고, 위 약정금채권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는 2014. 10. 20.자 이 사건 지불확인서(갑 제2호증의 1)인데, 위 지불확인서는 원고에 의해서 위조되어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당심의 판단

가)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 근거하여 G와 C를 상대로 그 약정에 따른 3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5904호)에서는 위 지불확인서의 실질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10826호)에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G와 C의 상고로 계속된 상고심(대법원 2020다240649호)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내려져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관련 약정금 소송의 확정판결과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한편, 당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위 관련 약정금 소송의 제1심판결에서도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지불확인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자(C)의 무자력 여부

1) 피고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2. 2. 기준으로 C가 대표이사로 있던 E 소유인 이 사건 건물1)의

시세가 매우 높았고 영업이익도 막대하여, C가 E에 대하여 보유하던 주식가치를 감안하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C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주채무자인 G은 담보신탁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30억 원에 달하는 우선수익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G의 재산도 C의 자력 평가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오로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인 연대보증인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C의 자력 관련

(가)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가 E와 별개로 보유하던 개인 재산은 ① 이 사건 아파트 시가 6억 원에서 그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412,800,000원을 제한 187,200,000원과, ② 인천 중구 K 소재 토지와 건물 시가 969,753,840원에서 그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826,602,197원을 제한 143,151,643을 합산한 330,351,643원(=187,200,000원 + 143,151,643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C가 이미 원고에 대하여 원금 30억 원의 이 사건 약정금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C가 최소한 2,669,648,357원(=30억 원 - 330,351,643원) 이상의 적극재산을 더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C의 채무초과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먼저, 당시 E의 수익이 약 200억 원 정도로 막대하여 C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소극재산을 초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갑 제9호증, 을 제19, 20,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앞서 본 관련 약정금 소송과 L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가등기말소 소송[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1514(본소), 51521(반소), 이하 ‘관련 가등기말소 소송’이라 한다]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2014. 12. 무렵에 E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약 2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어들이거나 거두어들일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소송들에서 일방 당사자였던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제기한 위 주장을 이 사건에서 그대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② 설령,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당시 E의 수익이 200억 원 상단에 이른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200억 원이 곧바로 E의 주식가치에 반영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는 그 자체로 무리가 있다.

③ 더 나아가, 가사 위 200억 원이 곧바로 E의 주식가치에 반영된다는 피고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E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12.5%2)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던 C가 가진 주식가치는 25억 원(=200억 원 × 12.5%) 상단에 불과하여 위 2,669,648,357원을 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다음으로, 당시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시세가 300억 원 상당의 고가이었으므로 이를 C가 보유한 주식가치로 평가하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본다.

① 을 제20,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관련 약정금 소송과 가등기말소 소송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2015. 1. 무렵에 이 사건 건물의 시세가 약 300억 원 상단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주장 역시 위 소송들에서 일방 당사자였던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제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② 그리고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시세가 300억 원 상당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3)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4) 를 종합하면, 담보신탁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㉓

Q은행과 R은행이 각 32억 5,000만 원을 우선수익 한도금액으로 하는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㉔ S은행이 91억 원을 우선수익 한도금액으로 하는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합계

156억 원의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우선수익권 합계액을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건물의 시세 300억 원에서 공제하면 이 사건 건물의 순가치는 144억 원(=300억 원 -

156억 원)으로 볼 수 있고, 이를 E 주식 12.5%의 보유자인 C가 가진 주식가치로 평가하면 18억 원(=144억 원 × 12.5%) 상당에 불과하여 이 또한 위 2,669,648,357원에 훨씬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분명하다.

(라) 결국,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G의 재산 관련

(가)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주채무자인 G이 담보신탁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30억 원을 우선수익 한도금액으로 하는 공동 제3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주채무자인 G의 일반 재산에 불과한 것으로 연대보증인인 C의 이 사건 매매예약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특별히 고려할 만한 요소가 되지 아니한다. G이 C의 처로서 두 사람이 부부관계에 있었다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불확인서(갑 제2호증의 1)에서 G이 위 우선수익권 30억 원으로 이 사건 약정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그와 같은 변제 약정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자신 앞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 주장

피고는 C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피고가 C의 조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2. 2. 당시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존재를 몰랐고 원고조차도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던 시기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과 그에 기한 가등기가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없었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8455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을 제2, 3, 4호증의 각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아버지인 U이 C에게 2011. 11. 22. 5,000만 원 및 2012. 8. 16. 4,000만 원의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의 어머니인 V(C의 누나)가 C에게 2014. 7. 17.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C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이 위 날짜별로 작성된 사실, ④ C와 피고 사이에 2014. 12. 1.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1,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예약하되, C가 2015. 12. 2.까지 위 ①, ② 차용금채무를 피고에게 변제하면 위 매매예약을 해제한다. 매매예약 완결일은 2017. 12. 2.로 하고, 피고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이를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그런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② C의 가까운 친족으로 C와 사이에 위와 같이 빈번한 금전거래를 하여 왔던 피고 측으로서는 당시 C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피고의 주장대로 C의 이 사건 사업이 매우 번창하고 있었다라면, C가 위 사업이 한창이었을 2014. 7. 17.까지도 누나인 V 또는 조카인 피고로부터 위 사업 규모에 견주어 볼 때 비교적 소액에 불과한 3,000만 원 등을 지속적으로 빌리면서 당시 C와 G 부부의 거주지였던 이 사건 아파트마저도 대물변제예약의 담보물로 내놓은 사정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 측으로서도 한번쯤은 의구심을 가졌어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③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6억 원이었음에도 C와 피고 사이에는 이를 매매대금 4억 1,200만 원에 예약함으로써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래한 점, ④ C가 대물변제예약의 해제 시한인 2015. 12. 2.까지도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끝내 변제하지 못한 점(C가 피고가 주장하는 C의 당시 수익 규모에 비해서 소액인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못내 수긍하기 어렵다), ⑤ 피고가 C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2020. 11. 23.은 관련 약정금 소송에서 C의 패소가 확정된 2020. 10. 21.의 직후인데, 위 패소 확정 판결로써 C는 원고에 대하여 원금 30억 원 규모인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지급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황만으로 그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용, 판사 최희영, 판사 추경준

별지

1) 그 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2) 을 제22호증(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2013. 7. 1. 현재 E의 총 주식 50,000주 중 G이 15,625주(31.25%), M가9,375주(18.75%), C, N, O, P이 각 6,250주(각 12.5%)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 시점까지 그와 같은지분비율이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실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C의 보유 재산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C의 보유 지분을 위 주주명부와 달리 인정하기는어렵다.

3) 다만, 을 제8, 9호증(각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무렵인 2013. 8. 8.경 S은행이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위 건물의 가액은 172억 9,000만 원 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무렵인 2014. 12. 22.경 T회사이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위 건물의 가액은 약 212억 원 으로 각기 평가되어 원고의 위 주장과는 상당한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4)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2020. 10. 6.자 준비서면 4면 참조

5) 다만, 위 각 금원이 U, V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음에도 차용증은 피고를 채권자로하여 작성된 경위에 대한 피고의 설명은 없다.